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444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신경렬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채권

평택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B이 (주)C의 대표로서 신고 후 위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B를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2022. 6. 3. 기준 B의 체납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59,154,410원이다.

나. 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처분행위

- 1) 피고는 B과 2007. 3. 6.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다.
- 2)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만 한다) 소유의 분양전환용 임대아파트인데, B은 2007. 12.경 L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8.경까지 보증금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피고,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2017. 3.경부터는 피고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¹⁾.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증액, 전환 등을 통해 2011. 11.경 93,764,000원이 되었다(월 임료는 322,360원).
- 3) 한편, (주)D은 B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6112 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주)E은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7. 8. 11. LH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주)E은 B에 대한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또한 B은 2017. 11.경 G회사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G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G회사는 위 채권을 재차 H회사에게 양도하고 LH에 대해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4) LH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209,000,000원으로 하여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위 분양전환가격에서 임대보증금 93,764,000원과 수선비 10,362,000원을 공제한 104,874,000원에 분양전환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체결 전일까지의 임대료 및 화재보험료 406,230원을 더한 금액(105,280,230원)이 수분양자가 납부할 분양전환 잔금이다.
- 5)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여 2020. 12. 9. L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거래가액 209,000,000원).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위 금융기관에게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 등으로, B의 채권자인 F에게 3,300만 원을, H회사에게 52,926,561원을 각 대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있었던 부담을 제거하고, LH에게 분양잔금 105,269,86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B과 2021. 5. 11.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후 제3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기타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고,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가사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1/2 지분은 B의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 부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B 명의로 일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므로, B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수탁자인 B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있었고,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259,154,410원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LH 소유의 분양전환용 임대아파트였고, 피고와 B은 혼인기간 중 L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체로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2017.경부터는 피고가 거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증여 전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93,764,000원 반환채권, 분양전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중 85,926,561원에 대해서는 B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추심하였거나, B의 채권자에게 양도되어, 그 잔액은 7,837,439원에 불과하였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정에 비추어 그가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분양전환잔금을 지급하여 분양전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었음이 용이하거나 확실성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등에게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L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 잔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한 점, ④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점, 당시 B와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던 점 비추어 보면, B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1/2 지분을 가리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가리켜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5.경부터 B와 별거하였고, 이 사건 증여가 있는 후 얼마 되지 않아 B와 협의이혼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B으로부터 얻은 임대차보증금 중 차액 7,837,439원 상당과 B이 행사함이 용이하지 아니한 분양전환권을 가리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1

부동산 목록

4	2021년11월29일	경기도 화성시		월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경사지붕 23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20.710㎡ 2층 220.710㎡ 3층 300.560㎡ 4층 300.560㎡ 5층 300.560㎡ 6층 300.560㎡ 7층 300.560㎡ 8층 300.560㎡ 9층 300.560㎡ 10층 300.560㎡ 11층 300.560㎡ 12층 300.560㎡ 13층 300.560㎡ 14층 300.560㎡ 15층 300.560㎡ 16층 300.560㎡ 17층 300.560㎡ 18층 300.560㎡ 19층 300.560㎡ 20층 300.560㎡ 21층 300.560㎡ 22층 300.560㎡ 23층 300.560㎡ 지1 101.880㎡	명칭변경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경기도 화성시	대	44556.7㎡	2009년9월21일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표시번호	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9년9월21일		월근콘크리트구조 74.73㎡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44556.7분의 83.38	2008년6월24일 대지권 2009년9월21일	

별지2

<표1> [] 의 소재기일(2022. 6. 3.) 현재 국세채납액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채납액 (단위:원)
근로소득세	2018	2018.04.30.	2018.07.31	12,105,340	16,862,720
근로소득세	2018	2018.06.30.	2018.09.30	3,785,520	5,182,300
사업소득세	2018	2018.07.31.	2018.10.31	18,860	19,420
근로소득세	2018	2018.07.31.	2018.10.31	5,505,290	7,470,260
퇴직소득세	2018	2018.07.31.	2018.10.31	216,320	222,800
근로소득세	2018	2018.08.31.	2018.11.30	4,635,270	6,234,240
법인세	2017	2017.12.31.	2018.12.31	47,511,000	63,545,860
부가가치세	2018	2018.10.25.	2018.12.31	2,716,080	3,632,730
사업소득세	2018	2018.09.30.	2018.12.31	339,070	349,240
근로소득세	2018	2018.10.31.	2019.01.31	3,654,900	4,860,940
사업소득세	2018	2018.11.30.	2019.02.28	698,280	719,220
근로소득세	2018	2018.11.30.	2019.02.28	4,497,370	5,947,760
부가가치세	2018	2018.12.31.	2019.03.31	18,148,110	23,864,730
사업소득세	2018	2018.12.31.	2019.03.31	2,546,760	3,348,960
근로소득세	2018	2018.12.31.	2019.03.31	4,987,510	6,558,330
사업소득세	2018	2019.01.31.	2019.04.30	1,796,000	2,348,270
근로소득세	2018	2019.01.31.	2019.04.30	5,222,100	6,827,680
사업소득세	2019	2019.02.28.	2019.05.31	1,159,350	1,506,970
근로소득세	2019	2019.02.28.	2019.05.31	4,630,820	6,020,020
근로소득세	2019	2019.03.31.	2019.05.31	477,720	492,050
부가가치세	2019	2019.04.25.	2019.06.30	13,781,370	17,812,410
사업소득세	2019	2019.03.31.	2019.06.30	487,960	502,590
근로소득세	2019	2019.03.31.	2019.06.30	5,629,900	7,276,490
사업소득세	2019	2019.04.30.	2019.08.05	282,430	290,900
근로소득세	2019	2019.04.30.	2019.08.05	4,429,770	5,221,310
사업소득세	2019	2019.05.31.	2019.08.31	132,040	136,000
근로소득세	2019	2019.05.31.	2019.08.31	3,625,260	4,630,950
퇴직소득세	2019	2019.05.31.	2019.08.31	348,400	358,850
사업소득세	2019	2019.06.30.	2019.10.29	123,080	126,770
근로소득세	2019	2019.06.30.	2019.10.29	3,661,410	4,622,510
근로소득세	2019	2019.07.31.	2019.11.29	3,257,160	4,087,470
근로소득세	2019	2019.08.31.	2019.12.10	242,340	249,610
퇴직소득세	2019	2019.08.31.	2019.12.10	874,830	901,070
부가가치세	2019	2019.10.25.	2020.02.28	37,690,360	46,453,160
법인세	2019	2019.12.31.	2021.04.20	456,140	469,820
합 계				199,674,120	259,154,410

1) B와 피고는 2015.경 별거하였고, 2016.경 피고가 B을 상대로 이혼소송(수원가정법원 2016드단501405)을 제기하였는데, 2017. 2. 2.경 위 사건에서 ‘피고가 2017.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B은 부양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며, 피고와 B은 2018. 12.까지 별거를 유지하되 어느 일방이 의무와 책임을 어길 경우 협의이혼을 고려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